

의안번호	제985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김종대 · 공창섭 · 구점득 · 김상찬 · 김상현 · 김인길 박남용 · 박선애 · 박현재 · 심영석 · 정순욱 · 진상락 최영희 · 최희정 의원
발의연월일	2022. 3. 3.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985
----------	-----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김종대·공창섭·구점득·김상찬·김상현·김인길
박남용·박선애·박현재·심영석·정순욱·진상탁
최영희·최희정 의원(14명)

1. 제안이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창원시 내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사. 구매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창원시 내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 기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기업은 창업시 관내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관내기업
2. 산업재해 및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관내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관내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관내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관내기업
6.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관내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4.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5.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
6. 장애인기업 홍보 및 장애경제인 최고경영자 리더십 강화 등 경쟁력 강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기관이 구매할 제품 중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총 구매액(물품과 용역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촉진) ①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용역·물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인기업제품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게는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약칭: 장애인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판로지원법)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2. 물품별·공사별·용역별 구매목표액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2. 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제품의 제품별 직접 구매실적



창 원 시



수신 창원시의회의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제정 관련 검토의견서 송부(김종대 의원)**

1. 의회사무국-1572(2022. 2. 14.)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조례 제정 개요

조례안	부서 검토 의견	발의자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장애인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봄. 	김종대 의원

- 붙임 1. 부서검토보고서 1부.
2. 최종조례안 1부. 끝.

창 원 시



주무관

이교은

의회협력담당

김정미

정책기획관

전결 2022. 2. 24.

김종필

협조자

시행 정책기획관-1544

(2022. 2. 24.)

접수 의회사무국-1853

(2022. 2. 24.)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정책기획관 (옹호 / 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2264 팩스번호 055-225-4702 / goni07@korea.kr / 비공개(5)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검토 보고

김종대 의원 발의 예정인 창원시 내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I 조례(안) 개요

- **조례제명** :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종대 의원
- **상정시기** :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3월중)
- **제안이유**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창원시 내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II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 지원, 자금, 인력, 기술판로 등의 지원,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등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계획 수립 추진
- **안 제6조(지원 대상)**
 -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체납기업 등 해당기업 지원 제외함

○ 안 제7조(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전시회 등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음

○ 안 제8조(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총 구매 액의 100분의 1이상 우선구매하고,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

○ 안 제9조(구매촉진) 및 안 제10조(홍보)

-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지원계획에 미달할 경우 행정기관장에게 시정조치
- 구매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 게시
-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시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할 수 있음

Ⅲ 담당부서 검토내용

○ 관계법령 저촉 여부 : 해당 없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조에 따라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법률의 저촉은 없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 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비용추계 비 대상)

※ 장애인기업 활성화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하여 선언적으로 경비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서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 비용추계 제외

○ 제정안의 취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매년, 중앙정부는 전국 공공기관의 공공구매비율을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제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고 있음
('21. 12. 31. 기준)

구 분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비고
법정구매비율	구매총액의 50%	물품구매액의 5% 용역구매액의 5% 공사구매액의 3%	구매총액의 1%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市 목 표	87.58%	10.41%	2.00%	24.16%	
실 적	89.7%	11.28%	2.64%	23.7%	

- 현재, 우리시 관내 장애인 기업체 수는 112개이며, 장애인기업의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여 지원조례가 없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다른 지자체 유사 조례 제정 현황 : 29개 지자체(광역시 16, 기초 13)

구 분	자치단체명	비 고
광역시자치단체	충남, 강원도, 전북, 전남, 경북, 경기도, 경남, 충북,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제주도, 세종시	
기초자치단체	정읍시, 고양시, 성남시, 원주시, 강릉시, 진주시, 안동시, 서울 중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서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노원구, 서울 마포구	

※ 경남에서는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조례 제정 운영 중

-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우리시 장애인기업 구매실적은 2.64%로 법정 의무 구매율(1%이상)을 준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

☞ 창원시 장애인기업 현황

계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 타
112	34	27	22	11	18

○ 주요 조문 검토결과 ☞ **수정사항 없음**

○ 부서 종합의견 ☞ **조례제정 동의**

- 본 제정안은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장애인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법령 1부

4. 타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 1부. 끝.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7조에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4.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5. 장애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
6. 장애인기업 홍보 및 장애경제인 최고경영자 리더십 강화 등 경쟁력 강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상기 조례안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하여 선언적·권고적으로 경비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 성 자 스마트혁신산업국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붙임4

타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

('21.12.31.기준)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개)정일
1	충청북도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2014-10-31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2015-01-01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5-10-12
4	경상남도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2015-12-10
5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6-07-19
6	경상북도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9-19
7	경북 안동시	안동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6-09-28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6-12-20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30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7-09-27
11	경남 진주시	진주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	2017-12-20
12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2-07
13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2-12
1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8-05-17
15	전라남도	전라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0-04
16	전라북도	전라북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018-11-09
17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9-02-15
18	강원도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2019-03-08
19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2019-04-15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9-04-19
21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9-09-16
22	충청남도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2019-09-20
2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2019-10-30
24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9-12-31
2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2020-03-31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20-09-24
27	전북 정읍시	정읍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20-12-23
2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16
29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9-29



창 원 시 의 회



수신 창원시장(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회 송부(김종대 의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의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2. 2. 25.(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의사항 :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정 부담 등
- 조례안 개요

조 례 안	발 의 자	상 정 시 기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김종대 의원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붙임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1부. 끝.

창원시의회의장



주무관 **박주영** 입법예산담당 **유정호**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전결 2022. 2. 14.

협조자 전문위원 **강웅기**

시행 의회사무국-1572 (2022. 2. 14.) 접수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의회사무국 (용호동) / <http://council.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5373 팩스번호 055-225-4743 / dejavu4934@korea.kr / 비공개(5)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2. . .

발 의 자 : 김종대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창원시 내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장애인기업 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장애인기업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사. 구매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창원시 내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 기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기업은 창업시 관내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관내기업
2. 산업재해 및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관내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관내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관내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관내기업
6.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관내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4.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5. 장애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
6. 장애인기업 홍보 및 장애경제인 최고경영자 리더십 강화 등 경쟁력 강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기관이 구매할 제품 중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총 구매액(물품과 용역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촉진) ①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용역·물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인기업제품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게는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